

(稅務管理課)

1. 일반현황

□ 직원현황

<'96. 1.31 현재>

구	부	정원	현							원	과부족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정	원	28	28	1	3	5	8	11			
현	원	29	29	1	3	2	10	12	1	+ 1	

□ 사무분장

계	별	업	무	분	장	내	역
세입	총괄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 징수 보고서 작성 (현재) ○ 시.구세의 가산금 및 증가산금 결의 ○ 시.구세의 징수부 및 수납부 관리
징수	1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체납액 징수 ○ 소관세목의 감액, 환불, 충당 ○ 시.구세 압류재산 및 환가 ○ 시.구세외 수입 총괄 ○ 소관세목의 불납결손 처리
징수	2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세, 자동차세관련, 면허세등 체납액 징수 ○ 소관세목의 감액, 환불, 충당 ○ 소관세목의 불납결손 처리 ○ 시.구세 교부청구와 징수 촉탁 ○ 시.구세 과년도 체납세 정리 보고

□ 장비현황

구	분	장						비	고
		계	컴퓨터	프린터기	FAX	복사기	타자기		
		68	31	13	1	2	1	20	

□. '96 세입·세출 예산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구성비 (%)	'95 예산액	구성비 (%)	증(△)감	
합계	125,047,082	100	114,687,349	100	10,359,733	
세	지방세	59,560,724	47.6	52,994,038	46.3	6,566,686
	세외수입	50,523,407	40.4	45,602,450	39.8	4,920,957
	경상적 세외수입	22,241,465	17.8	18,348,138	16.0	3,893,327
입	임시적 세외수입	28,281,942	22.6	27,254,312	23.8	1,027,630
	조정교부금	9,101,000	7.3	12,532,000	10.9	△ 3,431,000
	보조금	5,861,951	4.7	3,558,861	3.0	2,303,090
	국고 보조금	2,035,709	1.6	1,604,753	1.4	430,956
	시비 보조금	3,826,242	3.1	1,954,108	1.6	1,872,134

'96. 주 요 업 무

1. 과년도 체납 지방세 정리 적극 추진

누중되고 있는 체납지방세를 최소화하고 '96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징수 대책을 강화하여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기간 : '96.1 - '96.12 (연중)

□ 현 황 : 33,402백만원 (시세 : 29,875백만원 구세 : 3,527백만원)

□ 징수목표 : 4,405백만원 (시세 : 3,700백만원 구세 : 705백만원)

시세	: 년평균 체납세 징수율 : 12.5%
구세	: 년평균 체납세 징수율 : 20.9%

□ 추진방향

[체납관리체계확립]

- 고지송달 → 독촉 → 압류예고 → 압류 → 공매예고 → 공매 → 청산(배당)
- 체납발생시 적기 채권확보 - 체납후 1차 독촉기일 경과후 즉시 압류
- 체납세 대체재산 보유여부조사 - 전산망을 이용한 거주 및 재산조사
- 체납자 관허업(인.허가)취소등 행정 제재강화 - 체납자 인.허가 취소요구
- 법정관리, 소송진행, 경매대상 체납자 상시파악 즉시대응 - 배당내용등
- 고액체납자 - 환가 조치(공매)강행 - 압류후 6월경과 100만원이상 체납자
- 과오납금에 대한 신속조치 - 감액, 환불등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예방
- 무재산으로 인한 징수불능분 결손처분 - 재산, 직장, 소득등을 철저히 조사
- 징수촉탁제도 활용 - 타.도 전출자는 징수촉탁의뢰

[체납세 징수전담반 구성운영]

○ 체납세 징수전담반 구성

- 1개반 6명

총괄	: 재무국장
보좌	: 세무관리과장
조장	: 징수1.2계장외 4명
장비	: 차량 1대

[체납세 중점정리기간 설정운영]

- 중점 정리기간 : 연 4회 8개월
 - 현년도 체납정리 : 1월 - 2월, 7월 - 8월
 - 과년도 체납정리 : 5월 - 6월, 11월 - 12월
- 중점 정리운영 - 체납정리 책임제 확행
 - 부진세목에 대한 집중정리 대책수립시행
 - 금액 단위별 징수책임자 지정
50만원이상(계장), 100만원이상(과장), 500만원이상(국장)
 - 동별 징수책임자 지정

[체납세 관리 전산화추진]

- 체납세 관리 : 세목별.년도별관리 - 개인별종합관리원칙
- 전산화 추진을 위한 체납자료 및 공부정리철저
- 개인별 체납자료 전산입력 부진사항 조속완료

[체납세 정리에 따른 홍보]

- 중점 홍보 - 시기별.내용별로 중점사항 홍보
- 반회보, 지역신문등을 통한 홍보
- 기타 유관기관 활용하여 홍보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체납자의 납세의식 결여와 무재산(중소,양소등)자가 많음
 - 사업부진으로 인한 도산 및 잦은 주소이동등으로 행방불명자 증가
- 대책
 - 체납자 보유재산조사 및 조기채권확보실시
 - 주소변동자 전자계산소 확인자료를 이용 독촉고지서 출력 송달

2. 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은 지방자치제 실시로 분출하는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자원조달 방법으로써 자치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확대와 개발이 용이한 수입원이므로 새로운 세원발굴과 누락세원예방, 누증하는 체납액 정리에 총력 경주

- '96목표 : 29,846백만원('95목표 : 28,994백만원)
- 추진부서 : 시민봉사실외 21개과에 67 종목
- 추진기간 : 년중 실시하되 중점정리기간 설정 집중 정리
 - 중점 정리기간

1차 : 상반기	-	1, 2월
2차 : 하반기	-	7, 8월
- 추진방법 : 해당 실·과별 자체 추진계획수립 시행
(년2회 평가보고회 개최 - 상·하반기)
- 신규 수입원 발굴
 - 중점 발굴대상 :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 추진방안
 - 국·공유지 점용료, 사용료, 변상금 : 예외없이 과세
 - 각종 과태료 적기 부과 : 체납자 독촉 강화
 - 행정 실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용료, 수수료 : 조정을 인상 및 민간위탁
- 체납금 정리 강화
 - 부과부터 철저히 하여 체납발생 사전 예방
 -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책임 승달
 - 체납자 재산조회 채권 확보
 - 징수불능분, 무재산자 결손 처분

3. '96 지방세정 보고회 개최

지방세정의 국민적 불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서 지방자치제하의 중요성과 새해들어 달라지는 내용등을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이 세정에 널리 협조토록함에 있음.

□ 기본방향

- 지방재정 운영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구제제도에 대한 홍보
- 지방세정의 전반에 걸친 홍보로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
-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법의 홍보

□ 세부추진계획

- 개최일시 : '96. 1.30 (화) 14:30 - 15:40
- 개최장소 : 구청지하상황실
- 참석인원 : 200명 내외
 - 기업체 임직원
 - 직능단체임원
 - 구세심의위원
 - 주민대표등
- 보고회 내용
 - 구 재정운영현황
 - 지방세 부과징수 절차 및 구제제도
 - '96년 달라지는 지방세법 홍보
 - 기타 일반사항

4. 지방세비리척결 "자율 평가제" 실시

지방세 비리방지 감시활동을 예방위주의 자기책임 방식으로 전환하여 평가 결과의 공개로 세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납세협력을 증진시키고자함.

□ 비리 척결 자율평가제의 개요

○ 평가기준일 및 공개

- 평가기준일 : 6월말, 12월말
- 공개 시기 : 지방세정보고회때
- 공개 방법 : 지방재정운영 상황공개와 연계추진

○ 평가요령

-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사전설정
-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확보

○ 평가결과조치

- 평가결과의 공개 : 지역주민의 외부통제효과 거양 및 납세협력 증진유도
- 평가결과의 활용 : 운영상 문제점의 보완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

□ 평가항목

- ① 부과 및 수납업무 일일결산
- ② 부과 및 수납업무의 전산처리
- ③ 과오납금 발생 및 처리상황
- ④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등 접수, 처리현황
- ⑤ 진정, 질의등 민원처리현황
- ⑥ 세무비리 발생현황
- ⑦ 세무비리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
- ⑧ 세무비리에 대한 재정상 조치
- ⑨ 지방세 체납상황
- ⑩ 지방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반응

5. 당면현안사항

□ 현년도 체납지방세 집중정리

체납자의 담세력 및 납세의식 결여와 지방세 부과액 증가에 따라 체납액 누증 및 세입결산의 차질이 우려되는 바, 이에 "체납지방세 집중정리기간"을 지정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특히 체납징수 시범구로서 세수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함.

○ 집중정리기간 : '96. 1.10 - 2.29 (2개월간)

○ 정리대상 및 목표

- 대 상 : '95년도에 부과되어 발생된 체납지방세
- 체납액 : 9,223,309천원

(단위 : 건/천원)

구 분	합 계	시 세	구 세
건 수	88,299	58,114	30,185
세 액	9,223,309	8,392,324	830,985

○ 징수목표 : 100%

○ 세부추진사항

- 자진납세홍보 및 체납처분에 예고문 발송 (반회보, 지역신문등 활용)
- 체납고지서 출력 및 송달 (동별, 직원별배시 우편송달)
- 자체기동반 설치 (2개조 10명)

○ 행정사항

- 체납정리실적 자체평가 실시 (구, 동)

- └ 직원별, 계별 체납정리실적 일일결산제 확행
- └ 주간정리실적 평가 및 분석